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웰컴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년 6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7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02-6353-7300/ www.welcomefund.co.kr), 각 판매회사

9. 인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 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유리한 가격 및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에 해당하는 공모주 비중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도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금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6.17.

웰컴국공채 Post-IPO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EK832]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30%이하를 국내 주식(공모주포함)에 투자하므로 채권의 금리변동위험, 공모주 투자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공채(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및 은행채, 신용등급 AA-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고,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 및 Post-IPO 주식(상장이후 1 년 이내 종목)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권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은행채, 신용등급 AA-이상 회사채 등 우량 채권 위주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 이자 수익 추구
-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1 년 수준으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최소화 추구

2) 주식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우량 공모주 및 Post-IPO 주식(상장이후 1 년이내 종목)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 추구

①공모주
- 대내외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 신규상장기업(IPO) 수요예측에 참여
- 기업가치 및 수급 분석을 통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도출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공모 주식 선별 투자

②Post-IPO
- 신규 Post-IPO 종목 중 산업/업종내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매력도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
- 시장 변동성 및 수급이슈로 주가하락에 따른 저평가된 Post-IPO 종목에 투자

비교지수: (KOSPI x 30%) + (CD 금리 x 70%)

※ 그러나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84	0.30	0.81	0.8465	186	275	368	566	1,1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24	0.70	1.16	1.2400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7%이내	0.69	0.15	0.60	0.6964	141	215	292	456	9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89	0.35	0.75	0.8963	92	187	287	498	1,107

주 1)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 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3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5 년차	설정일이후	최초설정일
	25.06.18 ~ 26.06.17	-	-	-	25.06.16 ~ 26.06.17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2	-	-	-	1.15	2025.06.16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주 1) 비교지수 : (KOSPI x 30%) + (CD 금리 x 7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채권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 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허승구	1977	책임 (채권운용팀, 팀장)	12	8,574	4.97	-	4.97	5.44	22 년
박승민	1991	책임 (주식운용 2 팀, 과장)	17	4,487	5.24	5.74	4.97	5.44	4 년 3 개월
김덕기	1983	부책임 (주식운용 2 팀, 팀장)	13	3,269	1.93	-	4.97	5.44	13 년 4 개월
송환일	1997	부책임 (주식운용 2 팀, 사원)	16	3,687	-	-	4.97	5.44	6 개월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국공채 및 우량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금리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공모주는 기존의 상장된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당해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당해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17 시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5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 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웰컴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53-73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 년 7 월 10 일 |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고</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5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5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기관(F)</td><td>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 103 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 (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I)</td><td>납입금액 2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집합투자기구 공시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CONTENTS

[목 차]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K8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K833
수수료선취-온라인(A-E)	EK8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K8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K8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K8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K8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EK8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K8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EK8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K8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K8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효력발생일 이후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K8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K833
수수료선취-온라인(A-E)	EK8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K8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K8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K8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K8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EK8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K8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EK8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K8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K8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06.14.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2)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5.06.16.	최초설정
2025.11.11.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2)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5.12.30.	1)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 부책임운용역 변경 - 윤효성 → 송환일
2026.07.10.	정기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웰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대표전화: 02-6353-7300,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

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 6. 17.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채권운용부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허승구	1977	채권운용팀 (팀장)	12	8,574	4.97	-	4.97	5.44	22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한국투자증권채권운용, 리테일 및 주식리서치(2002~2006) -미래에셋자산운용 혼합형펀드 운용 및 채권 리서치(2007~2008) -현대차증권 RP북, 프랍북, ELS, DLS원금북 운용(2009~2013) -한화자산운용 시가펀드 운용(2013~2015) -SK증권 RP북, 프랍북, ELS, DLS원금북 운용(2015~2017)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17~2021)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21~2024) -HDC자산운용 채권운용팀(2024~2025) -웰컴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2025~현재)				

[주식운용부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승민	1991	주식운용2팀 (과장)	17	4,487	5.24	5.74	4.97	5.44	4년3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골든컴퍼스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2015~2017) -로만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17~2019)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식운용팀(2019~2021)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2021~현재)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덕기	1983	주식운용2팀 (팀장)	13	3,269	1.93	-	4.97	5.44	13년4개월
송환일	1997	주식운용2팀 (사원)	16	3,687	-	-	4.97	5.44	6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덕기)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현대자산운용 공/사모 주식운용(2010~2014)				

	-한가람투자자문 연기금, 자문형랩 주식운용(2014~2016) -더블유자산운용 주식운용/채권 등 총괄(2016~2017)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 자문형랩 운용(2017~2020)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20~2021)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팀장 (2023~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송환일)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한국자산평가 주식옵션평가팀(2023~2024)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2024~현재)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 및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 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허승구: 해당사항 없음
- 박승민: 1개 / 174억
- 김덕기: 2개 / 535억
- 송환일: 1개 / 174억

③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허승구	2025.06.16 ~ 현재	김덕기	2025.06.16 ~ 현재
박승민	2025.06.16 ~ 현재	윤효성	2025.06.16 ~ 2025.12.29
		송환일	2025.12.30 ~ 현재

주)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판매보수 (연간, %)	수수료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0.30	납입금액의 1.0% 이내 (선취)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선취- 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0.15	납입금액의 0.70% 이내 (선취)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0.7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0.35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0.09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금전신탁	0.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 20억 이상인 투자자	0.1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0.7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1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0.35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	0.3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0.19	-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각 종류별 운용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5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5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 103 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2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합니다.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및 은행채, 신용등급AA-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고,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 및 Post-IPO주식(상장이후 1년 이내 종목)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주요내용
①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AA-이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A1 이상)등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⑤집합투자증권 등	1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⑥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 이내	
⑦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④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기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금 및 환매조건부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상	투자 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②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②, ③,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대상 ⑤ 내지 ⑦], [투자제한 ② 내지 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대상 ②]의 본문 규정 및 [투자제한 ④의 가목], 법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투자대상 ① 및 ④] 규정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이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공채(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및 은행채, 신용등급AA-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고,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 및 Post-IPO주식(상장이후 1년 이내 종목)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권 투자전략

- 우량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달성을 목표로 포트폴리오 구성
- 편입자산 만기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초기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Passive 전략을 기본으로 함

(가) 패시브(passive) 전략

①Carry수익 확보

: 투자자산의 만기에 보유이익(Carry수익 : 이자수익과 롤다운 효과에 따른 채권 가격상승 이익) 획득 후 금리 상승시 높은 금리로 발행된 유가증권으로 재매수

*롤다운 효과 : 채권이 만기에 가까울수록 시가평가가 상승하는 효과

②고금리 종목 Buy&Hold 전략(만기까지 보유)

③포트폴리오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1년 수준으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최소화 추구

* 듀레이션 1년 구간은 유동성이 풍부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및 향후 재투자시 용이합니다.
짧은 듀레이션으로 펀드 운용중 평가손익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채권 만기시 평가손익과 관계없이 매수수익률로 수익률이 확정됨

(나) 액티브(active) 전략

①교체매매 : 저평가 종목 매수/ 고평가 종목 매도, Rolling effect 및 Credit 리스크 최소화

- 롤링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종목을 선택하여 매매하여 금리상승시 리스크 최소화
- 크레딧 리스크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으로의 교체 매매를 통해 리스크 최소화 가능

*롤링효과(Rolling Effect): 금리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수익률이 하락하여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을 매수 후 보유하다가, 만기가 짧아지면서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의미합니다.

②차익/스프레드 거래 : 만기간/섹터간 시장 불균형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 추구

(예시 : 장기물의 상대적 강세 예상시→장기물 비중 확대/ 단기물 비중 축소,
여전채 수요 증가에 따른 상대적 여전채 강세 예상시→여전채 비중 확대/ 회사채 비중 축소)

③리스크 헷지 및 크레딧 시장 분석 : 듀레이션 조절 및 크레딧 채권 사전 매각 등으로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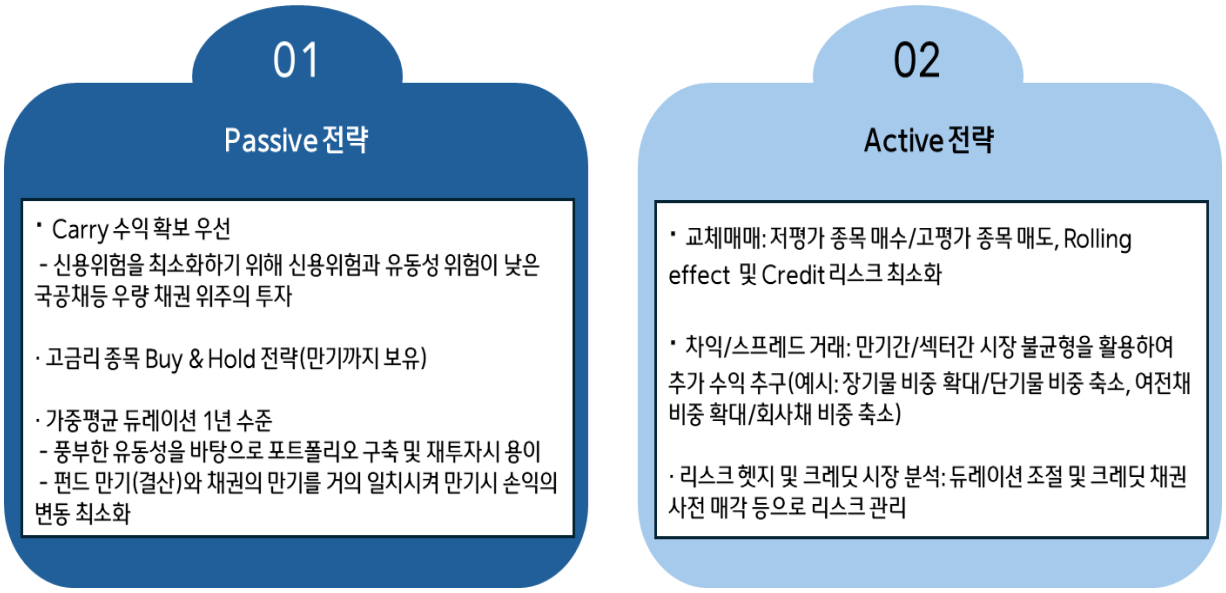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투자전략 변동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주식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우량 공모주 및 Post-IPO주식(상장이후 1년 이내 종목) 등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 추구

①공모주

- 대내외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 신규상장기업(IPO) 수요예측에 참여
- 기업가치 및 수급 분석을 통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도출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공모 주식 선별 투자

[공모주투자 프로세스]

※ 팀 운용 체제 : 웰컴자산운용 공모주펀드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심층분석 및 집단지성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팀운용체제를 지향합니다.

②Post-IPO

- 신규 Post-IPO종목 중 산업/업종내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매력도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
- 시장 변동성 및 수급이슈로 주가하락에 따른 저평가된 Post-IPO종목에 투자

■ POST IPO 운용 전략

Post-IPO 종목선정 기준	■ 신규 IPO종목中 상장이후 1년 이내 종목 ■ 산업 / 업종내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매력도가 있는 종목선정 * 정량적 기준 : 성장성(매출, 영업이익),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Valuation (PER, PBR, EV/EBITDA 등) * 정성적 기준 : 산업내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회사의 장기비전,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트렌드 부합 등
Post-IPO 종목관리	■ 신규 IPO종목中 주기적인 퀀트스크린, 시장 트렌드 적합 기업 등 모니터링 실시 ■ 특히, 당사의 Post-IPO 종목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중심으로 적정가치 분석에 근거한 수익창출 기회 모색(목표가 산정, 업사이드, 매매전략 등) ■ 단순한 BuY & Hold 전략이 아닌,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적인 Buy & Sell 트레이딩 전략 병행

③기타 전략

- 이벤트드리븐 전략 : 수익 추구가 가능한 특정 이벤트를 중심으로 알파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특별한 상황(Special situation, 예: 기업인수합병, 유·무상증자 등) 이벤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벤트(Frequent event, 예: 블락딜 등)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KOSPI x 30 %) + (CD금리 x 70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자산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1)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생성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에는 변경등록 및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2)KOSPI지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을 시가총액방식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주3)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가 발행되어 유동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코픽스 금리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2026.06. 기준)

투자자산군		종목 예시
채권 (60% 이상)	국공채 등 우량채권	국공채 : 국고, 통안, 공사채, 지방채 등 우량채권 : 신용등급 AA- 이상의 카드, 캐피탈, 회사채 등
주식 (30% 이하)	신규상장 IPO 종목	상장 일정과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상장 예정 종목 : 리벨리온, 어피닛, 일진제강, SK플라즈마, 무신사,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당근, SK에코플랜트 등)
	Post-IPO종목	상장이후 1년이내 종목 편입 예정 (2026년 6월 기준 상장 후 1년 이내 종목 : 케이뱅크, 씨엠티엑스, 그린광학, 대한조선 등)
	기타 종목	이벤트 발생시 초과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종목 편입 예정

주1)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신규상장 IPO 종목의 경우 상장계획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4) 위험관리

- 채권부문: 1년 수준의 듀레이션 유지로 시장위험 최소화하며 위험관리를 수행
- 주식부문: 투자실행 이전부터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 분석을 수행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 요인 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펀드 위험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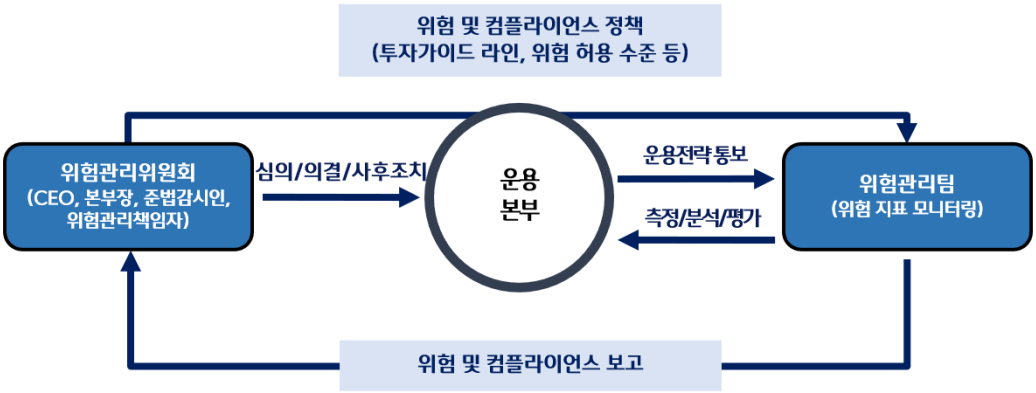

사전적 위험관리
펀드계약 이전에 펀드의 운용스타일 및 구조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

사후적 위험관리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위험수준 모니터링 위험 수준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운용본부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채권의 금리변동 및 공모주식의 가격변동 등 투자대상자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30%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변동위험	국공채 및 우량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금리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모주 투자위험	공모주는 기존의 상장된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당해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당해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량환매 발생시 편입자산의 유동성 및 환금성 제약으로 환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운용전략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은 신고서의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작성시점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작성시점 당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식에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될 수 있고, 주식시장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 및 주식투자의 위험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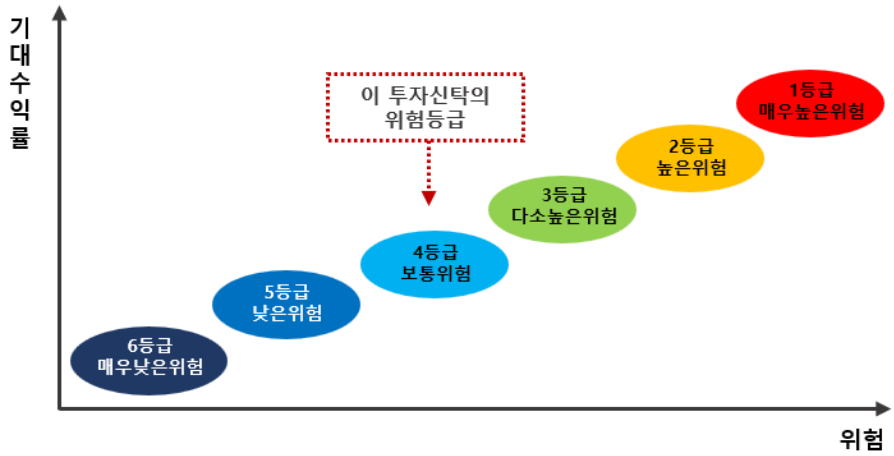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추후 설정 기간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예상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기준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웰컴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웰컴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등급	분류기준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성에 따라서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2)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웰컴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3)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 4)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 5)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입니다.
주 6)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 7) 다른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 8)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각 모집합투자기구별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 9)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	-	-	-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 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 20억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1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O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종류명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시

주)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오후5시 이전 환매청구 시 : 3영업일 기준가, 오후5시 이후 환매청구 시 4영업일 기준가)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256 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welcome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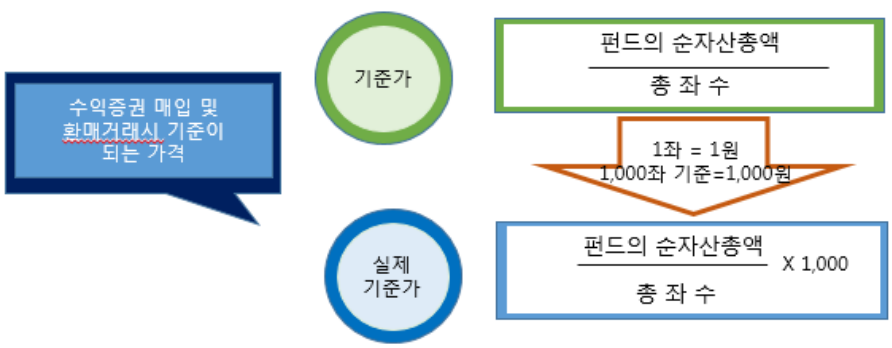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 원: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조직에 실장이 있는 경우 그 실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간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팀장
업 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약관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선취 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 이내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 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 20억 이상인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1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	-	
지급 시기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수익증권의 현물발행 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 (연간, %)										
명칭 (종류)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관리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5000	0.3000	0.0250	0.0150	0.8400	0.0065	0.8465	0.810	0.8465	0.3361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5000	0.1500	0.0250	0.0150	0.6900	0.0064	0.6964	0.600	0.6964	0.318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5000	0.7000	0.0250	0.0150	1.2400	-	1.2400	1.160	1.240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5000	0.3500	0.0250	0.0150	0.8900	0.0063	0.8963	0.750	0.8963	0.329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C-F)	0.5000	0.0900	0.0250	0.0150	0.6300	0.0066	0.6366	-	0.6366	0.349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0.5000	0.0000	0.0250	0.0150	0.5400	0.0063	0.5463	-	0.5463	0.3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5000	0.1000	0.0250	0.0150	0.6400	-	0.6400	-	0.64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0.5000	0.7000	0.0250	0.0150	1.2400	-	1.2400	-	1.24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0.5000	0.3500	0.0250	0.0150	0.8900	0.0051	0.8951	-	0.8951	0.32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5000	0.3900	0.0250	0.0150	0.9300	-	0.9300	-	0.93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5000	0.1900	0.0250	0.0150	0.7300	0.0058	0.7358	-	0.7358	0.3360
보수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6.16 ~ 2026.06.15]

※ 기타비용: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78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6.16 ~ 2026.0615]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41,079

※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6	275	368	566	1,1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6	275	368	566	1,138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1	215	292	456	9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1	215	292	456	9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59	396	685	1,5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7	287	498	1,1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87	287	498	1,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5	133	204	356	7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5	133	204	356	7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6	114	176	306	6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6	114	176	306	6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6	134	205	358	8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6	134	205	358	8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59	396	685	1,5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7	287	498	1,1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87	287	498	1,1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5	298	517	1,1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5	195	298	517	1,1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5	154	236	410	9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5	154	236	410	91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일반해지 시 과세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기(2025.06.16 - 2026.06.1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6.06.15)		
운용자산	12,490,770,087		
증권	12,243,783,113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246,986,974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86,924,838		
자산총계	12,577,694,925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03,962,228		
부채총계	303,962,228		
원본	12,184,098,751		
수익조정금	147,131,496		
이익잉여금	-57,497,550		
자본총계	12,273,732,697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5.06.16 - 2026.06.15)		
운용수익	31,247,569		
이자수익	360,289,398		
배당수익	4,924,037		
매매/평가차익(손)	-333,965,866		

기타수익	516,976		
운용비용	78,378,104		
관련회사 보수	78,378,104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3,303,056		
당기순이익	-49,916,615		
매매회전율	1,551.51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 4)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주 5)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942,272	20,356	835,868	18,688	1,205	1,551.51	32.36

(주 6)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ETF 제외한 공모펀드-증권펀드 유형)을 의미합니다.

(주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6.16 - 2026.06.15)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39,134	40.2254	0.1028	-	-	-
주식이외의증권 (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571,000	0.8539	0.0001	-	-	-
합계	610,134	41.0793	0.0067	-	-	-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1기(2026.06.15)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46,986,974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6,986,97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300,000,00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1,943,783,113				
1. 지분증권	1,659,617,800					
2. 채무증권	10,284,165,313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86,924,83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1,850,668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5,074,170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2,577,694,925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03,962,22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81,967,742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1,994,486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03,962,228				
자 본						
1. 원 본	12,184,098,75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89,633,946		0		0	
(발행좌수 당기: 12,184,098,751 좌	이익잉여금	-57,497,550		0		0
전기: 0 좌	수익조정금	147,131,496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1,003.72 원						
전기: 0.00 원						
전전기: 0.00 원)						
자 본 총 계		12,273,732,697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577,694,925		0		0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기(2025.06.16-2026.06.1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65,730,411				
1. 이 자 수 익	360,289,398					
2. 배당금수익	4,924,037					
3. 수수료수익	516,976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302,938,882				
1. 지분증권매매차익	1,291,825,47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1,113,408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36,904,748				
1. 지분증권매매차손	1,360,876,87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71,886,209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04,141,66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81,681,160				
1. 운용수수료	56,219,054					
2. 판매수수료	19,349,179					
3. 수탁수수료	2,809,87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303,056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9,916,61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0409686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208	213	87	90	121	123

(주1) 2025.06.16 - 2026.06.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1,480,937좌/71,746,972원

나. 종류형펀드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58	60	28	29	30	30

(주1) 2025.06.16 - 2026.06.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548,620좌/9,582,320원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34	34	29	30	5	5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10	10	10	10	0	0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7	7	2	3	4	4

(주1) 2025.06.16 - 2026.06.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48,818좌/2,150,026원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83	85	5	5	78	79

(주1) 2025.06.16 - 2026.06.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9,946,037좌/60,014,626원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10	10	6	6	4	4

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2	2	2	2	0	0

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16 - 2026.06.15	0	0	4	5	4	4	1	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5.06.18 ~ 26.06.17	-	-	-	25.06.16 ~ 26.06.17
운용펀드	1.93	-	-	-	1.86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07	-	-	-	1.00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2	-	-	-	1.15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02	-	-	-	0.95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28	-	-	-	1.22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	-1.58
비교지수	-	-	-	-	36.41
수익률변동성(%)	-	-	-	-	5.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1.02	-	-	-	0.96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18	-	-	-	1.12
비교지수	44.22	-	-	-	44.77
수익률변동성(%)	4.96	-	-	-	4.96

(주 1) 비교지수=(0.3 * [KOSPI]) + (0.7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 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 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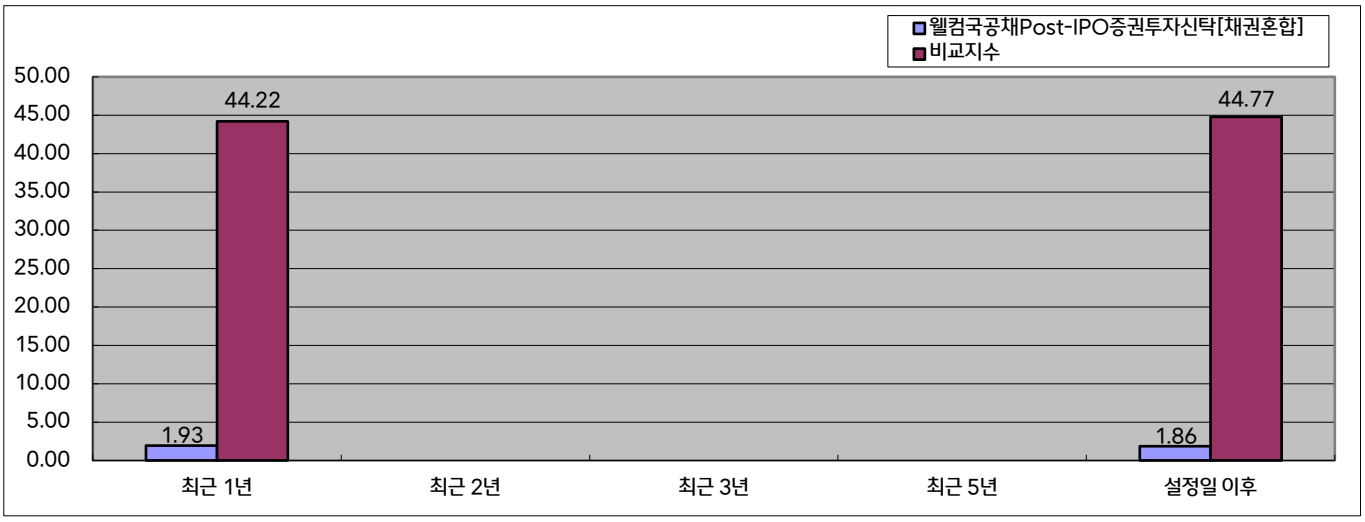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06.18 ~ 26.06.17	-	-	-	-
웰컴국공채Post-IPO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93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07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2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02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28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15	-	-	-	-
비교지수	49.78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1.02	-	-	-	-
비교지수	44.2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18	-	-	-	-
비교지수	44.22	-	-	-	-

(주 1) 비교지수 : (KOSPI x 30 %) + (CD금리 x 70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 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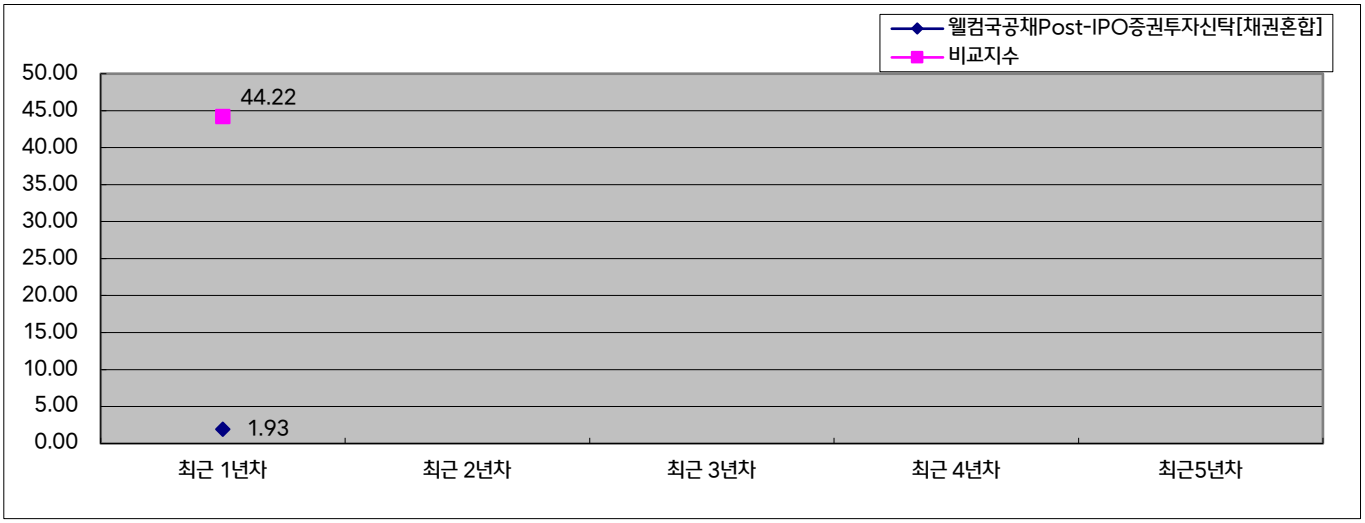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억원, % / 2026.06.17.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8	103	0	0	0	0	0	0	0	3	2	127
	(14.41)	(81.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5)	(1.70)	(100.00)
합계	18	103	0	0	0	0	0	0	0	3	2	127
	(14.41)	(81.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5)	(1.70)	(100.00)

(주1) 괄호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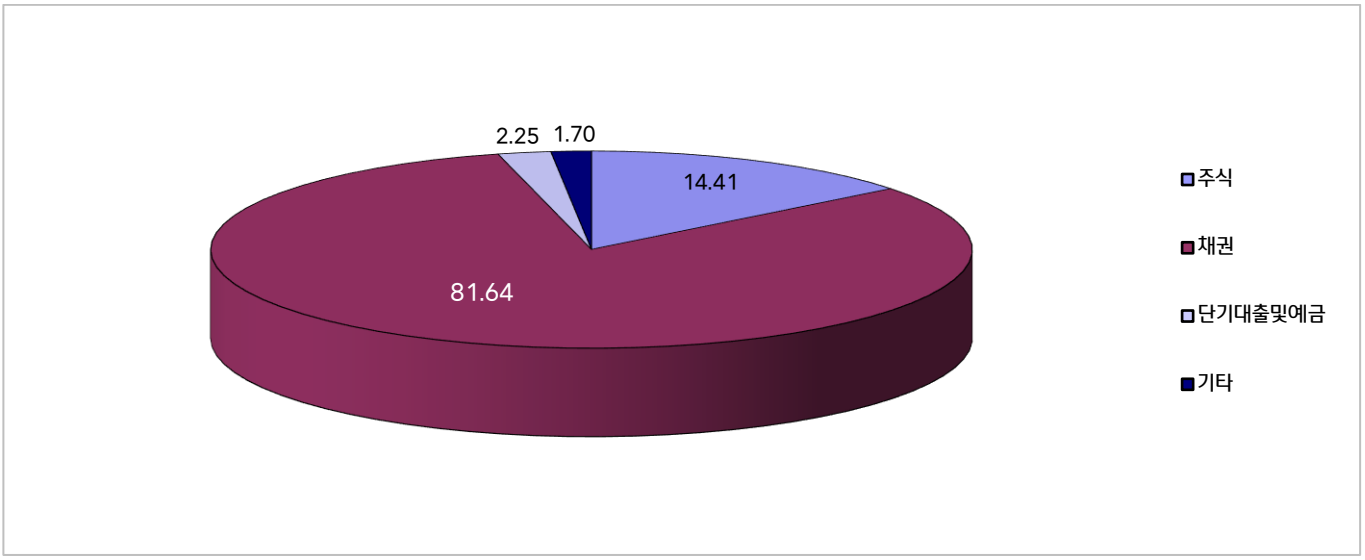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펀드 운용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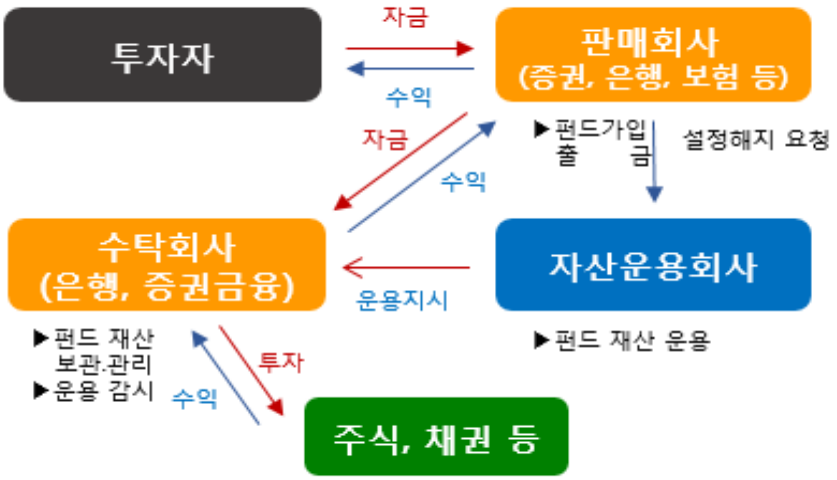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연락처: 02-6353-7300, www.welcomefund.co.kr)
회사 연혁	2000. 03. 13: AIG 투자자문코리아주식회사 설립 2008. 07. 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업 인가 2008. 09. 01: 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9. 02. 04: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인가 전환 2009. 10. 16: 파인브릿지 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7. 07. 19: 에셋원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 04. 19: 웰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10. 24: 본점 소재지 이전
납입자본금	125억
주요주주현황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100%)
이해관계인	해당 사항 없음 ※이해관계인 현황은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황이며, 운용펀드의 수탁 및 판매현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12.31.)	제 26 기 ('24.12.31.)
현금및예치금	7,297	7,839
매도가능금융자산	18,435	12,394
유형자산	8,000	8,295
무형자산	56	62
기타자산	2,046	2,057
자산총계	**35,834**	**30,647**
기타부채	10,381	8,980
부채총계	**10,381**	**8,980**
자본금	12,512	12,512
주식발행초과금	1,054	1,054
자본조정	-	-
이익잉여금(결손금)	11,960	8,101
자본총계	**25,526**	**21,667**
부채와자본총계	35,834	30,647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01.01~25.12.31)	제 26 기 (24.01.01~24.12.31)
영업수익	11,983	7,594
영업비용	7,087	7,417
영업외손익	12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08	187
당기순이익	3,859	164

라. 운용자산 규모(2026.06.17.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1,447	465	3,855	-	977	1,416	9,340	-	661	5,290	23,45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1544-0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qv.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 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대표전화: ☏02-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1 ☏ 02-398-39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2) 주요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 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는 비율을 말한다)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 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유진투자증권	관계증권	위탁거래	주식	810
유진투자증권	관계증권	위탁거래	채권	708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 금액	거래사유
2026년 6월 9일	웰컴공모주하이일드리츠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한국전력1075 매도	50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응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 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 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의무투자

구분	내 용
투자주체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주2)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금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하되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하며,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유재산 추가투자

구분	내 용
투자주체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용 및 판매활성화 도모
투자금액	상기 '가'의 고유재산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음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 운용기간 내(투자신탁 만기일 이전까지)
투자금액 회수계획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회수될 예정입니다.
추가투자 내역	①2025.06.16(월) : 3억 (2025.06.16(월) 설정청구) ②2025.11.12(수) : 3억 (2025.11.11(화) 설정청구)

주1) 투자금 추가 투자 및 환매 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에 추가 투자 및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내역은 금액 기준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